

의안번호	제 37 호
의 결 연 월 일	2010년 10월 일 (제295회)

**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**

발 의 자	정 현 의원
발의연월일	2010년 9월 일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7
----------	----

발의연월일 : 2010년 9월 일
발 의 자 : 정 현 의원
찬 성 자 : 박문희·장병학·김영주·윤성옥·
박한규·김재종·김동환

1. 제안 이유

- 도민이 경제생활을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운용중인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.

2. 주요 내용

- 가. 현실에 맞게 일부 조문의 개정(안 제5조제4항제4호)
- 나. 알기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5조제4 항제5호, 안 제5조제5항)

3. 조례안 : 붙 임

4. 관계법령 발췌 : 붙 임

5. 예산조치 : 2010년 150,000천원 예산편성 됨(도비)

6. 관련부서 협의 : 경제통상국 생활경제과와 협의

7. 입법예고사항 : 본 조례안은 「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」 제22 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함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경제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4호의 “경제특별도”를 “충청북도”로 한다.

제5조제4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.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조제5항 중 “잔임기간”을 “남은기간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생략)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. 1. ~ 3. (생략) 4. <u>경제특별도</u> 경제정책의 홍보 및 경제교육 활성화 방안 5.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⑤ 단체 대표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,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<u>잔임기간</u> 으로 한다.	제5조(경제교육협의회 구성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<u>충청북도</u> ----- ----- 5. <u>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</u> 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남은기간</u> -----.
⑥ (생략)	⑥ (현행과 같음)

관 계 법령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